행정명령서

- 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 - 가. 처분대상: 전라북도 전역 (해당 시설·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)
 - 나. 처분기간 : 2021. 7. 19. 0시 ~ 2021. 8. 1. 24시 (2주간)
 - 다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(붙임 참고)
 - 전주, 군산, 익산, 완주 혁신도시는 2단계, 그 외 11개* 시군은 1단계 적용
 - * 정읍, 남원, 김제, 완주(혁신도시 외 지역), 진안, 무주, 장수, 임실, 순창, 고창, 부안
 - 라. 처분이유
 -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단일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함
 - 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각호
 - 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
 - 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제2항 ,제4항
 - 아. 시설폐쇄·운영중단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3항 부터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
- 2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제8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<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>

대상자		1회 위반	2회 위반	상한액
전원	원등 명령 거부 한 치료 환자	50만 원	100만 원	100만 원
방역지침 위반	시설·장소의 운영자·관리자	150만 원	300만 원	300만 원
	시설·장소의 이용자 버스·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	10만 원	10만 원	10만 원

- 3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4. 처분 총괄담당자

이 름	소 속	직 급	연 락 처
김성국	전북도청 사회재난과	지방공업사무관	063-280-3797
김종수	전북도청 사회재난과	지방시설주무관	063-280-3823

2021. 7. 18.

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

참고1

전라북도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 ['21.7.19~8.1]

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-5936(2021.7.14.)에 따른 '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'은 본 행정명령의 방역조치로 대체함

- ▶ '자율과 책임을 기반'으로 각 시·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'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'
- ▶ 각 시·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,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
- ※ 시·군 별도의 행정명령 및 방역조치 효력을 우선시 함

※ 시·군 별도의 행정명당 및 당역소시 요덕을 추신시 암						
구분	1단계 (11개 시군)	2단계 (전주, 군산 약산 완주 혁신도시)	3단계	4단계		
단계 명칭	■지속적 억제상태 유지	■지역 유행/인원 제한	■권역 유행/모임 금지	■ 대유행/외출 금지		
결정·조정 권한	■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■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■시군구, 시도, 중대본	■ 중대본		
기준	■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(주간 평균)	■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	■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	■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		
	▶ 전국: 500명 미만	▶ 전국: 500명 이상	▶ 전국: 1,000명 이상	▶ 전국: 2,000명 이상		
	▶ 수도권: 250명 미만	▶ 수도권: 250명 이상	▶ 수도권: 500명 이상	▶ 수도권: 1,000명 이상		
모임		■ 4명까지 모임 가능 (5인 이상 시적모임 급자)				
행사	■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	■100인 이상 행사 금지	■ 50인 이상 행사 금지	■행사 금지		
집회	■5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1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50인 이상 집회 금지	■1인 시위 외 집회 금지		
기타 시설						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	
스포츠경기 (관람)장	■(실내)수용인원의 50% (실외)수용인원의 70%	■(실내)수용인원의 30% (실외)수용인원의 50%	■(실내)수용인원의 20% (실외)수용인원의 30%	■ 무관중 경기		
	■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(1~4단계), ■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		
박물관·미술 관 과학관	■ 시설면적 6m² 당 1명	■시설면적 6m² 당 1명의 50%	■시설면적 6m² 당 1명의 50%	■시설면적 6m² 당 1명의 30%		
실외체육시설	■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(3· ■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					
숙박시설	■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(직계가족 예외)	■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(직계가족 예외)	■객실 내 정원기준 초괴금지 ■전 객실의 3/4운영	■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■ 전 객실의 2/3운영		
도서관	■ 수용인원의 70%	■수용인원의 50%(2~4단계)				
키즈카페	■ 시설면적 4m² 당 1명	■시설면적 6m² 당 1명 (2~4단계)				
전시회·박람 회	■ 시설면적 4m² 당 1명	■시설면적 6m' 당 1명 (2~4단계)				
국제회의 학술행사	■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	■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(2~4단계)				
종교시설	■수용인원의 50% (좌석 한 칸 띄우기)	■수용인원의 30% (좌석 두 칸 띄우기)	■수용인원의 20% (좌석 네 칸 띄우기)	■비대면		
	■ 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자제 * 500인 이상 모임·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	■ 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100인 미만)	■ 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50인 미만)	■ 모임/행사 식사 숙박 금지		
학교	■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	년면등교 가능(1~2단계)	■ 밀집도 1/3~2/3 (고등학교 2/3 이내)	■원격수업		
			U+5 U-01 U A - TI O 5	•		

※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,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(교육부)